

'96년도 식품위생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의 식품위생 행정 시책 방향

송 인 상/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식품위생연구부

1. 서 언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소자녀화의 진전에 따라, 21세기 전반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본격적인 고령화, 소자녀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식품 위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고, 1996년에는 90억 2,900만엔(시설조정비 제외)(전년 대비 4억 600 만엔, 4.7% 증가)의 예산이 계상되어, 수입식품의 급증,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국민 식생활의 변화에 대응하고, 더나아가서 WTO협정 이후의 식품 유통의 국제화, 규격의 완화,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시행등 국내외 변화에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일본의 식품위생 대책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한 일본의 식품위생 행정을 고찰해 보고, 내용상 중복되는 감은 있으나, 일본의 식품위생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후생성 생활위생국 각과의 올해 업무 추진 시책을 자세히 자료화 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위생 행정 정책의 설정 및 집행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작성하였다.

2. 예산으로 본 식품의 안전성 확보 대책

가. 수입식품 감시체제등의 충실, 강화
(예산 9억 1,200만엔 - 1995년도
: 7억 1,600억엔)

근년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식품의 국제 간 유통의 진전에 따라 식품의 수입건수는 1995년에 약 105만건이며, 지난 10년간 약 2.7배가 되었다. 일본의 식품자급율은 열량 기준으로 50% 미만이므로, 국민들의 수입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국민 건강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이와같은 추세는 더욱 진전 될 것이므로 수입식품의 수입시 검사의 과학화가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과학적인 시료채취를 통한 모니터링 검사의 충실화, 감시체제의 강화와 함께, 수입 수속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위한 “식품 등 수입신고의 간소화 시스템(수입식품 감시지원 시스템)”과 세관의 시스템간의 연결 등의 실시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식품검사 기관의 정도관리를 위한 GLP(관리

운영 기준)의 도입 등, 수입식품 감시체계의 충실화와 함께, 업무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1) 수입식품 감시지원 시스템과 세관의 시스템간의 연결현재 후생성이 가동중인 수입식품 감시지원 시스템과 대장성 산하 세관의 시스템간의 연결과 이와같은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등에 451백만엔 배정
- (2) 수입식품 검역, 검사센터 경비잔류농약 모니터링등의 강화를 위하여 300백만엔 배정
- (3) 쌀의 수입에 따른 검사 경비상시 수입되고 있는 쌀의 잔류농약등 검사에 31백만엔 배정
- (4) 식품관계 검사기관의 신뢰성 보증 사업식품관계 검사기관에 GLP 도입 경비에 13백만엔 배정
- (5) 기타 업무 정보의 교환, 수집, 수출국 등록공장 제도 추진 사업,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정도 관리사업, 수입업자에 대한 위생 교육등 실시

나. 검역체계 강화

(예산 68억 300만엔(시설정비비 제외)– 1995년도 : 66억 9,300억엔)

최근 해외 여행자의 급증에 따른 효과적이고 신속한 검역을 위하여, 해외감염증 정보 수집 제공사업과 공기감염 질병자 운송격리실(이동식 격리침대)등 사업을 하고 있음

다.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대책

(예산 4억 8,800 만엔 – 95년도 : 4억 8,500 만엔)

총합적이고 다각적인 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어개류, 식조육 및 용기 포장등의 규격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미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ACCP제도 도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1995. 5)

하였고, 화학적합성품 이외의 식품첨가물 지정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소위 천연첨가물의 안전성도 재검토 하고 있다. 식품의 잔류농약 대책으로는 현재 108 농약에 대하여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2,000년도에는 200 농약으로 늘리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1) 식품의 고도 위생관리 시스템 도입 식품관계 영업자의 자주관리 기준(HACCP 제도)을 도입하기 위하여 800만엔 책정
- (2) 식품첨가물 지정제도 강화 소위 천연첨가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천연첨가물 지정제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6700만엔 책정
- (3) 식품 잔류농약등에 대한 대책 강화 잔류농약기준의 기반 조성을 통한 조기 정비를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음 : 10백만엔 책정
- (4) 기타 어개류의 자연독 안전 대책, 용기 포장등의 위생 대책 및 특수 영양식품의 시험 검사를 위하여 10백만엔 책정

라. 식품보건 행정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예산 2억 3,500만엔 – 95년도 : 2억 500만엔)

수입식품의 급증, WTO체제 출범등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최신의 정보 제공 및 상담사업과,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품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지방과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식중독등 식품관계 사고의 미연방지, 식품위생감시원의 기술 향상, 식품관계 영업자의 자주적 위생관리를 추진하는 식품위생협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1)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 정보의 제공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 식품위생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43백만엔 책정

(2) 식품표시 적정화 사업

영양표시제도 설정 이후, 이에대한 실태조사, 표시기준 책정등을 통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16백만엔 책정

(3) 기타

생명공학 기술 응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 유육등의 위생 대책 추진, 식품첨가물 위생 대책 추진을 통하여, 식품 보건 행정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음.

마. 국제화에 대응

(예산 1억 2,100만엔 –

95년도 : 1억 300만엔)

WTO체제 출범과 APEC 회원국으로써의 업무 추진을 통하여 착실한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고, CODEX와 EU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어개류등 수산식품의 위생 관리 체계 정비등을 추진하고 있다.

(1) 아시아 지역의 식생활을 반영한 CODEX 기준 책정 추진

본 사항은 일본이 제 10차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서구인의 식생활을 전제로 한 CODEX 규격을 아시아 지역의 식생활의 반영하여 조정하자는 사업으로 14백만엔 책정

(2) APEC 가맹국과의 수산식품등의 상호 승인 제도의 검토

APEC 가맹국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수산식품등의 상호승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8백만엔 책정

(3) 어개류등 안전 대책

주로 EU등에 수출되는 어개류등 수

출 수산물의 위생관리 개선 강화 및 지도 사업으로 39백만엔 책정

(4) 기타

국제식품규격에 조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CODEX 사업, 수출입 식육의 안전 대책, 개발도상국에 대한 위생전문가 연수등으로 국제화를 추진

바. 조사연구의 추진

과학기술의 발전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 국민 생활의 향상등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체조절기능을 구하는등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WTO체제 출범후, 기준 규격의 국제간 조화가 필요에 따른 외국과의 공동 연구등도 추진하고 있다.

3. 후생성 생활위생국의 활동의 개요

일본의 식품위생 행정은 후생성 생활위생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식품위생법 및 영양개선법의 일부 개정
(1995년 5월 24일)

- 23년만의 대 개정으로 금년은 동 개정 법의 착실한 시행이 주요 과제임
- 주요 개정 요점(식품위생법)
 - 잔류농약 기준 설정시, 후생대신은 농림수산대신에게 자료의 제공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음
 - 영업허가자 지위의 승계 규정 도입 및 허가의 조건인 영업허가에 대한 최저유효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첨가물의 지정 범위를 종전의 화학적 합성품에서 천연향료를 제외한 전

첨가물로 확대

- HACCP제도 도입에 대한 승인 근거 마련(처음에는 유 및 유제품 및 식육제품에 정할 예정임)
- 후생성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검사업무 관리(정도관리)에 관한 기준 첨가
-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할 의무를 정하고, 식품위생추진위원회를 위촉 할 수 있음
- 주요 개정 요점(영양개선법: 96. 5. 24. 부터 시행 - 다만 세부 사항은 1998. 4. 부터 적용됨)
 - 영양성분 또는 열량등을 표시하는 자는, 후생대신이 정한 영양표시기준에 따라야 함
- 각의의 결정(95. 3.)에 따른 "규제완화추진 계획"의 조치 실시
- 수입식품의 수입신고의 컴퓨터화 개시 (96. 2. 1.)
 - 세관컴퓨터와 연결 추진중('96. 2. 예정)
 - 식품수입자에게 검사 명령권 신설

이와같은 변화를 근거로한 금년의 주요 추진 사업을 담당 각과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식품보건과

- (1) 식품위생감시지도 업무
 - 감시 지도등의 정비
 - 시장(市場)위생검사소, 식품위생감시기동반의 정비로, 중요거점에 대한 전문적이고 광역적인 위생감시 및 지도 추진.
 - 음식점영업은 지역성을 감안, 보건소를 중심으로한, 효율적인 지도 및 영업 협력 업무 추진
 - 식품위생감시원의 훈련, 교육
 - 식품보건특수기술강습회, 식품위생감시원 연수회 등을 통하여 연수, 훈련 추진
 - 지방 식품위생감시원의, 연수회

를 통한 발표 적극 실시

- 식중독의 예방
 - 대형화 추세 ('94년 830건 발생, 환자수 35,735인, 사망자 2인, '95년 10월까지 570건 발생, 환자수 22,004인, 사망자 4인)
 - 집단급식소등 대형조리시설에 대한 영업자 지도, 감시 강화
 - "식중독처리요령"에 따름
- 수입식품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성 확보 대책
 - 수입식품의 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감시 지도 계획 수립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합격 발견 시, 이를 후생성에 통보
- 식품보건종합정보처리 시스템 운영
 - 동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결, 일부 정보 제공 및 연락 업무 추진. 앞으로 계속 발전 시킬 예정임.
- 영업허가등 사무의 적정화 추진
 - 영업허가 기간의 유효 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조치(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영업시설은 10년 까지 연장 요망)
 - 식품위생책임자에 대한 양성강습회 교육 내용의 표준화
 - 영업허가 신청양식의 전국적인 표준화 추진

(2) 식품위생검사시설의 정도 관리 기준 도입

검사 성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번 식품위생법 개정시, 후생성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정도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도 정도관리를 확대할 예정임.
이와같은 업무를 위하여, "식품 검사기관의 정도 관리 검토회"를 설치함.

(3) 자주관리 체제의 강화

- 국내 생산 식품에 대하여는 일본 식품위생협회를 통하여 실시
 - 전국의 65,000명의 식품위생지도원에 대한 순회 교육등 “식품 위생지도상담사업” 추진
 -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식품안전정보등 사업” 실시
- 수입식품의 경우 “일본수입식품안전추진협회”를 통하여 추진
 - “수입식품안전대책 지도강화사업” 추진
- 지역의 경우, 식품위생추진원을 구성, 추진

(4) 식품등의 기준 규격의 정비 등

- 자판기 영업 관련
 - 원두 추출 커피 자판기의 경우, 자판기이나 일정시간 보존 또는 사전 조리 인정
 - 자판기에 사용하는 열탕은 섭씨 85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분말 스프와 같이 위생적인 경우, 75도 이상도 인정

(5) 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1995. 4. 1. 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가, 제조년월일로부터, 기한표시를 바뀌었으나, 2년간의 유예 기간중이므로 이에 대한 지도중임. 또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부 표시 규정을 개정하였다.

- 제조장소 고유번호 표시 장소를 기재장소를 명기하고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원료인 식품인 경우, 대상 식품을 한정하여 송장에 표시도록 함.
- 통조림의 경우, 기한 표시 제도 적용을 배제할 예정임

(6) 생명공학 기법 이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

생명공학 기법 이용 식품의 제조사는 “조환 DNA 기술응용식품 식품첨가물의 제

조 지침(1994. 3. 12.)”에, 따르도록 하고, 이들의 안전성은 1996년 2월 5일자 “조환 DNA 기술응용식품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지침(위식 32 호)”에 의거 평가하고 있으며, 이때 대상은 신규성이 없고, 조환체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닌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응유효소인 키모신에 대하여 후생대신이 식품위생조사회에 의견을 조회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질의 제품이 지침에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환체 자체라고 볼 수 있는, 토마토등 7개 작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식품위생조사회 바이오테크놀로지 특별부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7) 미네랄 워터의 위생 확보(생략)

(8)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의 일본 개최

1996년 3월 5일부터 8일까지 동경에서 개최 되었다.

(9) 규제 완화의 추진

매년 각계의 의견을 들어, 매년도마다 구체적인 안으로 추진

(10)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추진

- 소비자의 질문등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 식품위생협회내에 “식품안전정보상담실” 설치, 운영
-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위생 행정에 대한 설명을 위한 “식품위생 행정 설명회” 개최
- 식품조사회의 경우, 식품규격부회와 식중독 부회는 원칙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타 부회는 의사요지를 공개키로 함

(11) 기타

- 모리나가 비소 우유 중독사건 사후 대책
 - 소화 30년(1955년) 발생한 중독 사건에 대한 행정 지원

- 가네미 유증 사건 사후대책
 - 소화 43년(1968년) 발생한 미강 유의 PCB 오염 중독사건에 대한 행정 지원

나. 신개발식품 보건대책실

(1) 영양표시 기준 제도 운영

규제 대상이되는 표시 영양성분 및 열량의 범위, 표시 되어야 할 사항의 표시방법, 강조 표시의 기준등을 정하고 있으나, 본 제도는 허가제가 아닌 자기인증제도이므로 경과조치기간인 1998년 3월 31일까지 지도를 실시함.

(2) 특수영양식품 대책

특정보건용 식품은 현재까지 58 품목에 대항 표시를 허가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청이 늘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리고 특별용도 식품의 경우, 표시 허가 기간의 연장 및 특정마크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종래의 강화식품 제도는 영양표시제도의 도입에 따라 1996년 5월 24일부로 폐지 되었다.(경과조치기간 : 1997. 5. 23.)

(3) 식사요법용 택배 식품 대책

1994년 3월 “당뇨병자용 택배식품 영양 지침”을 책정하였고, 1995년 12월에는 “고지혈증자용 택배식품 영양 지침” “고혈압증자용 택배식품 영양 지침”, “신장병자용 택배식품 영양 지침”을 책정하여 시행중.

(4) 건강식품 대책

건강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식품의 섭취량 및 섭취방법 표시에 관한 지침”과 “건강식품의 표시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지도중임. 또한 임신중 비타민A의 과다 섭취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에 있어서의 비타민A 섭취의 유의점 등에 대하여”를 통지하여 지도중임. 이외에는 약사법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현재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에서 후생성

의 지도에 따라, 건강식품에 대한 규격등을 정비하여, 43 품목에 대하여 규격을 정하고 있고, 이들을 심사후 JHF 마크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검역소 업무 관리실

(1)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 대책

현재 일본은 열량 기준으로 54%를 수입식품에 의존하고 있고, 1994년 수입건수는 약 96만건, 중량은 3,059만 톤에 달하고 있어,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수입식품 감시 지원시스템(FAINS)”

가동 개시 : 1996. 2. 1.

- 1997년 2월에 대장성 세관의 통 관정보시스템과 연결 예정

○ 위반 가능성 있는 식품에 대한 검사 명령권 발동

- 1995년에는 1.8% 실시, 1996년에는 2.2 % 실시 예정

○ 식품위생감시원의 대폭 증원(209명에서 263명 으로)

○ 수입되는 쌀에 대하여는 계속 잔류농약등을 검사 및 발표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 검사시, 불합격인 수입식품이 발견시 즉 시 이를 보고토록 지시

(2) 검역 업무(생략)

라. 유육 위생과

(1) 유, 유제품 및 육제품의 위생 대책

○ 종합위생관리체조과정에 따른 식품의 제조등에 대한 승인제도

- 현재 식품위생조사회에서는 동승인제도를 유제품 및 육제품에 도입하기 위한 승인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HACCP 원칙을 기본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용기포장된 가압식품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 유 및 유제품의 기준 규격 개정을 검토중임

(2) 잔류 동물용 의약품 대책

현재 옥시테트라사이크린등 6개 물질에 대하여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부서에 잔류물이 없는 식품이 생산 되도록 감시 지도에 대한 협력 요청.

(3) 어개류 위생 대책

- 대 EU 수출 수산식품의 취급
 - EU 역내에 수출하는 수산식품은, 그 가공공장이 EU에서 정한 요건에 합당하여야 하는바, 1995.4 부터 EU는 일본 수산식품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리비조개 이외의 수산식품의 대 EU 수출 수산식품의 취급에 대한 요령”을 제정하고, 이에 의해 대 EU 수출 수산식품 가공장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EU가 검사후, 1995. 12. 6.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가리비조개등 2매조개에 대한 요령을 설정중에 있음
- 복어의 위생 확보 대책
 - 현재 특정 지역(有明海 및 橘灣)에서 어획 되고, 유독부에서 근육부로 독의 이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여름복어”的 판매가 허용됨. 단 타 지역은 불허용.
- 호주산 식용 굴의 취급
 - 호주의 생식용굴 취급의 위생 관리체계가 우수함을 인정하여, 호주 타스마니아산 생식용 굴의 수입을 허용
- 패류의 안전 대책
 - 마비성 또는 하리성 패독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포 현황과 독화 패류의 출하

방지책 강구

○ 어개류의 감시 지도, 검사체제의 정비

- 시장위생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한 검사 수행

(4) 도축 검사와 식조 검사 체제의 강화

○ 도축장 및 식조처리장의 위생관리

- 도축장의 경우, “대미 수출 식육의 취급과 도축장의 인정에 대하여”를 참조하여 지도 강화. 특히 미생물 오염방지에 최대한의 노력 필요
- 식조처리장의 경우, “식조처리 사업의 규제 및 식조 검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HACCP 방식에 의한 위생관리 지침에 대하여”를 참고하여,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

○ 식조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 특히 “인정된 소규모 식조처리 업자”에 대한 지도 강화

○ 도축검사 결과의 환원

- 도축검사 결과가 생산 농가의 생산시 환원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음

○ 도축장 및 식조 검사원에 대한 연수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검사원에 대한 연수 강화와 “식조처리 사업의 규제 및 식조 검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실시를 요청

(5) 광견병 예방 대책

지금까지 매년 1회 실시하던 개 등록을 평생 1회로 하고, 광견병 예방주사의 년 1회 실시, 등록원부의 철저한 관리 및 광견병 예방 대책비용의 지방교부세화를 199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마. 식품화학과

(1) 식품첨가물 대책

- 식품첨가물 관련 식품위생법의 개정
 - 지정대상 첨가물을 천연향료 이외의 모든 첨가물로 확대
 - 기존의 천연첨가물 명부는 1996년 4월 23일 까지 확정 예정
 - 식품첨가물의 지정 및 사용 기준의 개정
 - PVPP를 지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첨가물 하나 삭제
 - 5개 품목에 대한 사용 기준 개정
 - 식품첨가물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 식품첨가물 지정시 필요한 시험 범위 등 지침서 작성
 - 천연첨가물의 안전 대책
 - 현재 466개인 천연첨가물중, 필요한 품목에 대한 아급성독성 시험을 5개년 계획으로 실시
 -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 기지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작업 실시
 - 식품첨가물의 일일 섭취량 파악
 - 실제 식품에 의한 식품첨가물 섭취량을 파악
- (2) 잔류농약 대책
- 식품중 잔류농약 대책
 - 현재('96.1.) 108개 농약에 대하여 약 7,000개의 기준이 있음('96. 4 현재 31개 농약에 대하여 검토중임)
 - 농약의 일일 섭취량 조사
 - 식품에 의한 실제 농약 섭취량은 ADI의 1% 이하 였음
 - 신속분석법의 개발
 - 신속분석방법의 공정분석법화

- 검토중
- 기타
 - 지방자치단체가 한 시험 결과의 후생성에 제공 요망
- (3) 용기 포장 대책
- 식품용 용기 포장
 - 1994년 2개의 규격을 설정하여 현재 14종의 개별 규격 설정
 - 세정제(생략)

4. 결 언

지금까지 일본 후생성 생활위생국의 식품위생 행정 시책에 대한 자료를 요약, 기술해 보았다.

이중 많은 부분은 우리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우리에게 해당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식품위생 행정 시책 수립 및 집행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중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크게 세가지로, (1)식품 관련 기준 규격의 설정시 식품위생조사회의 이용, (2)필요시마다, 신속히 과학적인 통지등 지침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는 제도, 및 (3)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이용한 장기 연구의 실시 제도로 생각된다.

특히, 축산식품의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제는 일본과 같이 국민 보건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정책 결정 수준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